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9. 23 선고 2015가단461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건물 관리단

변론 종결 2015. 8. 26.

판결 선고 2015.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1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5층의 집합건물인 B 상가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상가 건물 관리단이다.
- 2) 원고의 남편인 D는 2010. 3.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지급명령신청 등

- 1)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는 주식회사 삼천리(이하 '삼천리'라 한다)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삼천리에 가스요금 납부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D의 부탁으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 2) 그런데 피고가 가스요금을 연체하여, 삼천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가스요금을 대위변제 받았다. 그러자 서울보증보험은 2014. 1. 20. 청구금액을 34,118,840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10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3) 원고는 2014. 1. 29. 서울보증보험에 위 구상금 34,511,34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8.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998호로 위 구상금 34,51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 4) 위 법원은 2014. 8. 2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는 2014. 9. 1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1066호로 이전되었는데, 원고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아 위 사건은 2014. 11. 19. 내려진 소장각하명령이 2014. 11. 29. 확정됨으로써 끝났다.

다. D의 형사처벌

- 1) D와 B건물의 관리소장 E는 '2010. 5. 25. ~ 2011. 1. 28. 피고의 관리비 59,78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28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0. 22. D에게 징역 8월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는 수원지방법원 2014노638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D에게 징역 6월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34,51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의 횡령금을 변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에 대한 사건을 해지 신청하고, 추후 이 사건 구상금에 대하여는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합니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써 준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재항변 요지

D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가스요금을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관리소장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4. 12. 16.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은 2014.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써 주어야만 증언을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할 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써 주었다.

위와 같이 F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증언의 대가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F이 증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하도록 하였다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한 것이 그 증언에 대한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 D는 자신이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변제하고, E가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34,511,34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피해(59,780,000원)가 대부분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F은 2014. 12. 16.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 원고는 증인신청이 채택된 후 F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등에 대하여 잘증언해 달라'고 하였고, F은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런데 그 직전까지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있었다(심지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소송이 소장각하명령으로 끝났음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 채무를 면하였다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D가 피고에게 입힌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 F은 이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써 달라고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측이 피고의 가스요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 D와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D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구상금을 대납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면,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법원은 위와 같은 대위변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의 피고의 대한 다른 채무가 30,000,000원 넘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한 것은 F이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F이 '피고의 피해 회복여부'에 대하여 진실된 증언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진면이 있다.

-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와 가정경제를 함께 꾸려나가는 D가 피고에게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함으로써, D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포기한 것이 증언에 대한 대가가 하더라도,그 대가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